

발간등록번호

12-1371827-000013-01

2021 연구보고

# 광역도서관위원회 실태조사

2021. 12.



발간등록번호

12-1371827-000013-01

2021 연구보고

# 광역도서관위원회 실태조사

2021. 12.



# 제 출 문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광역도서관위원회 실태조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12.

---

■ 연구책임자 : 김보일(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 이 연구는 2021년 12월 7일 전부개정된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을 준용해 기술하였으며, 시행일은 2022년 12월 8일입니다.
- 이 연구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국)의 의뢰로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이나 의견 등은 도서관정보정책 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자의 개인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2
1. 연구 범위 .....	2
2. 연구 방법 .....	3
제2장 현행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법제적 진단 .....	5
제1절 법리적 위상 격하와 실체적 한계 .....	5
제2절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필요 .....	11
제3절 운영 내실화를 위한 체제 정비 .....	15
제4절 시사점 .....	17
제3장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	19
제1절 광역도서관위원회 기초 현황 .....	19
1. 설치 현황 .....	19
2. 설치 시기 .....	20
3. 설치 근거 .....	21
제2절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	25
1. 위원회 구성 .....	25
2. 주요 기능 .....	30

3. 회의 개최 .....	32
4. 관련 자치법규 .....	34
제3절 시사점 .....	37
<b>제4장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표적집단면접 .....</b>	<b>39</b>
제1절 전문가 그룹 .....	39
1. 전문가 그룹 대상 표적집단면접 개요 .....	39
2. 전문가 그룹 대상 표적집단면접 결과 .....	40
제2절 광역대표도서관 관장 그룹 .....	44
1. 광역대표도서관 관장 그룹 대상 표적집단면접 개요 ...	44
2. 광역대표도서관 관장 그룹 대상 표적집단면접 결과 ...	45
제3절 시사점 .....	49
<b>제5장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제안 .....</b>	<b>51</b>
제1절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모델 .....	51
1. 제1안 : 도서관 정책부서 중심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 도서관정책 심의 기능 강화 ...	51
2. 제2안 : 광역대표도서관 중심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거버넌스 역할 강화 .....	53
제2절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 .....	56
1. 도서관법 .....	56
2. 자치법규 .....	58
3. 행정조치 .....	64
<b>제6장 결론 .....</b>	<b>65</b>
<b>참고문헌 .....</b>	<b>67</b>



# 표 목 차

〈표 1-1〉 연구 방법 .....	4
〈표 2-1〉 광역도서관위원회 법적 설치 근거 : 「도서관법」 .....	7
〈표 2-2〉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광역도서관위원회 설치 관련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원도 .....	9
〈표 2-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 법적 근거 ...	10
〈표 2-4〉 광역도서관위원회 법적 설치 근거: 「도서관법」 .....	13
〈표 2-5〉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광역도서관위원회 기능 또는 심의사항 관련 자치법규 :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	14
〈표 3-1〉 시·도별 광역도서관위원회 현황 .....	22
〈표 3-2〉 시·도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내 광역도서관위원회 소관 업무 규정 현황 .....	24
〈표 3-3〉 시·도별 광역도서관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	26
〈표 3-4〉 시·도별 광역도서관위원회 도서관 협력 관련 분야 현황 .....	29
〈표 3-5〉 시·도별 자치법규 내 광역도서관위원회 기능 및 내용 현황 ...	31
〈표 3-6〉 시·도별 광역도서관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	33
〈표 3-7〉 시·도별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현황 .....	35
〈표 5-1〉 광역도서관위원회 법적 설치 근거 개선 : 「도서관법」 .....	57
〈표 5-2〉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안) .....	59
〈표 5-3〉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안) 기준 시·도별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비교 .....	63

## 그림 목차

[그림 2-1] 도서관위원회협의회 추진체계 .....	17
[그림 3-1] 광역도서관위원회 설치 현황 .....	19
[그림 3-2] 광역도서관위원회 설치 시기 .....	20
[그림 3-3] 광역도서관위원회 설치 근거 .....	21
[그림 3-4] 시·도별 광역도서관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평균) .....	28
[그림 3-5] 시·도별 광역도서관위원회 도서관 협력 관련 분야 현황 .....	29
[그림 3-6] 시·도별 자치법규 내 광역도서관위원회 위원 기능 및 내용 현황 .....	31
[그림 3-7] 시·도별 광역도서관위원회 회의 주요 안건 .....	33
[그림 3-8] 시·도별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주요 조항 현황 .....	36
[그림 5-1]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제1안) .....	53
[그림 5-2]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제2안) .....	55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006년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은 이전 관련법 과는 달리 도서관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전환점으로 작용함
- 도서관 정책의 중심조직으로서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새로운 도서관 정책의 추진체계가 마련되었으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시행계획을 법제화함으로써 도서관 정책 마련하여 시행하는데 주요한 동력이 되고 있음
- 국가도서관 정책의 수립·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가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에 대한 결정을 위해 광역도서관위원회(현,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특히, 광역시·도가 도서관 시책과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대표도서관(현,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시·도의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즉, 광역도서관위원회로 하여금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작되는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정책을 견인하여 균형적인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도서관위원회협의회[(가칭) 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광역도서관정책과 국가 도서관정책 간의 조정자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도서관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법적 기구에도 불구하고 2008년 9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2021년 5월 말 기준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세종·강원·충북을 제외한 14곳에서만 광역도서관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 이 가운데 8곳은 법적 설치 근거가 마련된 지 10년이 지나서야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어 그동안 국가 단위 도서관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도서관 정책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법적 근거에 따른 설치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광역도서관위원회의 현황 및 운영 내용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다만, 광역도서관위원회 간 정책협의를 위한 도서관위원회협의회 구성에 따라 필요한 일반적인 현황을 조사한 것이 전부임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 도출을 위해 「도서관법」에 따라 법적 설치 기구로서 광역도서관위원회에 대한 법제적 진단 및 실태조사를 실시함. 뿐만 아니라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전문가 및 광역대표도서관 관장들을 통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 이 연구는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위상 정립과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공간적 및 내용적 연구의 범위로 기술하고자 함
- 첫째, 공간적 연구 범위로 「도서관법」에 따라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17개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되, 현재 광역도서관위원회가 설치된 14곳에 대한 조사와 함께 설치되지 않은 3곳에 대해 구분하여 법제적 진단 및 현황 조사를 동시에 진행함. 또한, 17개 광역시·도의 광역도서관위원회로 구성된 도서관위원회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대상으로 법제적 진단 실시
- 둘째, 내용적 범위는 문헌연구를 통해 현행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법률, 17개 광역시·도의 지방자치법규 및 운영 규정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법제적 진단 실시. 또한, 17개 광역시·도의 광역도서관위원회에 관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자 함. 이를 토대로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전문가 및 실무담당자인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 이를 종합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위상 정립 및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자 함

## 2. 연구 방법

-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실태조사를 통한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 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단계별 진행
  - 문헌자료 조사를 통한 법제적 진단
    - 광역도서관위원회와 관련한 「도서관법」 및 도서관 관련 지방자치법규 조사 분석
    - 도서관위원회협의회 운영규정,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규정 조사 분석
    - 분석 내용 : 설치근거, 구성, 역할과 기능,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등
  - 현 단계 광역도서관위원회 실태조사
    - 17개 광역시·도 광역도서관위원회 기본 운영 현황 : 설치 현황, 설치 시기, 설치 근거 등
    - 17개 광역시·도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실태 : 위원회 구성, 주요 기능, 회의 개최, 주요 심의 내용, 관련 자치법규 등
- 관계 전문가 의견 및 실무협의회 담당자 의견 수렴
  -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학계 및 관계 기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표적집단면접
  - 도서관위원회협의회 실무협의회 담당자(광역대표도서관 관장 그룹)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표적집단면접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면대면 표적집단면접 진행의 어려움으로 서면으로 진행
  - 질문 내용 :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및 구성, 광역도서관위원회 기능과 역할, 광역도서관정책 추진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과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 관계, 도서관위원회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의견,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도출
  -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법제적 개선방안
  -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추진체계 개선방안
  - 광역도서관위원회 표준 운영 규정

<표 1-1> 연구 방법

단계	연구내용	세부 연구	추진방법
준비 단계	연구진행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업 내용의 검토 및 추진 내용 파악</li> <li>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진행방법 협의</li> </ul>	과업 지시서 검토 발주처 의견 청취
1단계 현행 광역도서관 위원회 관련 법제적 진단	법률 및 자치 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 도서관법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li> </ul>	문헌자료 조사
	예규 및 운영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 도서관위원회협의회 운영규정 ✓ 지방자치단체 광역도서관위원회 ✓ 운영 규정</li> </ul>	
2단계 광역도서관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기본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개 광역시·도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현황 ✓ 설치 현황 ✓ 설치 시기 ✓ 설치 근거</li> </ul>	현 단계 광역도서관 위원회 실태조사
	운영 실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개 광역시·도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실태 ✓ 구성 ✓ 주요 기능 ✓ 회의 개최 ✓ 주요 심의 내용 ✓ 관련 자치법규</li> </ul>	
3단계 관계 전문가 의견 및 실무협의회 담당자 의견 수렴	전문가 그룹 F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전문가 집단</li> </ul>	표적집단 면접 (FGI)
	광역대표 도서관 관장 그룹 F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도서관위원회 당연직 부위원장</li> <li>도서관위원회협의회 실무 협의회 담당</li> </ul>	
4단계 광역도서관 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제안	운영 개선 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법적 개선방안</li> <li>운영 추진체계 개선방안</li> <li>표준 운영 규정</li> </ul>	운영 방안 제안
5단계 보고	연구 보고	중간 보고회, 완료 보고회	보고회

## 제2장 현행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법제적 진단

### 제1절 법리적 위상 격하와 실체적 한계

- 도서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
- 이에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2006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법률 제8029호)를 통해 제12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 및 제22조(지역대표도서관) 등과 함께 동법 제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이 규정됨에 따라 법적 설치 근거가 마련됨
- 그러나 현재 2021년 12월 7일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를 통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국가도서관위원회’로 개칭되고, 지역대표도서관은 ‘광역도서관’ 그리고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광역도서관위원회’로 개칭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적용하여 기술하고자 함
  -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동법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르면 제1항을 통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이하 “지역도서관”이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 이러한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당해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구성에 관하여 「도서관법」을 통해 규정함
  -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도서관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 당해 관할지역의 도서관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책임성과 위원회의 위상을 고려하여 2006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법률 제8029호)에서 위원장에 대하여 당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반인 ‘시·도지사’로 규정함. 이외 부위원장은 광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규정

-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 수행에 대한 업무 상 과중으로 실제적인 광역도서관위원회 위원장 업무수행 및 위원회 운영에 제한이 있다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참고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부지사로 하향 조정하는 안이 제시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동 위원회의 심사보고서<sup>1)</sup>에 따르면 광역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현실적 조치이나 ‘시장과 도지사’로 하여금 지방도서관 정책을 심의하고 총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당초의 취지는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이에 2016년 2월 3일 일부개정된 「도서관법」(법률 제13960호)을 통해 광역도서관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부시장·부지사(해당 시·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로 하향하여 규정하게 됨
- 한편,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규정이 제4장 지역대표도서관 아래 제24조(지방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배치되었으나 2021년 12월 7일 개정된 현행 「도서관법」에서는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아래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이동하면서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지역도서관 정책 기구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

---

1) 의안정보시스템. (2021.12.27.)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E3T1E2M3G0G106W4F301L5Y2H4V5](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E3T1E2M3G0G106W4F301L5Y2H4V5)



<표 2-1> 광역도서관위원회 법적 설치 근거 : 「도서관법」

도서관법(2006년)	도서관법(2016년)	도서관법(2021년)
<p><b>제4장 지역대표도서관</b> (중략)</p> <p><b>제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 위원회의 설치 등)</b> ①시·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이하 “지방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③지방도서관위원회는 <b>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p> <p>④<b>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광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b></p> <p>⑤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p> <p>⑥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⑦지방도서관위원회의 <b>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b></p>	<p><b>제4장 지역대표도서관</b> (중략)</p> <p><b>제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 위원회의 설치 등)</b> …</p> <p>(좌동)</p> <p>④<b>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가 되고, …</b></p> <p>(좌동)</p>	<p><b>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b> (중략)</p> <p><b>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b> …</p> <p>(중략)</p> <p>④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가 되고, <b>부위원장은 제2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이 되며,</b>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p> <p>(생략)</p>

- 한편,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법」 제24조에 따라 당해 지역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관련 자치법규를 통해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와 강원도의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 구성에 관해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제8조(구성)을 통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규정. 위원장은 2016년 개정 「도서관법」에 따라 행정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광역대표도서관장인 서울도서관장이 됨. 위원은 당연직(행정1부시장, 서울도서관장, 도서관 업무 담당 본부장, 교육청 도서관 업무 담당 국장)과 위촉직(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 공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속하는 도서관의 관장 및 관계자 중 4명,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관계자 중 3명,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으로 구분하되 당해 관할지역의 다양한 관중에 대한 지방 도서관 정책의 반영을 위해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관중별 위원을 안배하고 있음
  - 반면, 강원도는 자치법규를 통해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 구성 인원에 대해 「도서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춘천시립도서관을 광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부위원장의 구성에 대해 「도서관법」에 규정하고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장이 아니라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 위원 구성에 있어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의 도서관 업무담당 과장, 대표도서관장, 그 밖에 도서관 및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여 광역대표도서관장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도서관법」에 규정한 바를 따르고 있다 할 수 없음
  - 단, 대전광역시의 경우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관련 자치법규에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표 2-2>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광역도서관위원회 설치 관련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원도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현행)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현행)
<p><u>제6조(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법 제24조에 따라</u> 관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u> .....</p>	<p><u>제7조(설치)</u> 도지사는 도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법 제24조에 따른 강원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u></p>
<p><u>제8조(구성)</u> ① 도서관위원회는 <u>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② 도서관위원회의 <u>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1부시장</u>이 되며 <u>부위원장은 서울도서관장</u>이 된다. &lt;개정 2016.7.14&gt; ③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u>당연직</u> 위원은 <u>행정1부시장, 서울도서관장, 도서관 업무 담당 본부장과 교육청 도서관업무 담당 국장</u>이 되며, <u>위촉직</u>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6.7.14&gt; <u>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u> <u>2. 공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속하는 도서관의 관장 및 관계자 중 4명</u> <u>3.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관계자 중 3명</u> <u>4.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u> ⑤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u>제9조(구성)</u> ① 위원회는 <u>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② <u>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u> 되고 <u>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u>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u> <u>2.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의 도서관 업무담당 과장</u> <u>3. 대표도서관장</u> <u>4. 그 밖에 도서관 및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강원도 도서관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p>

- 이렇듯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어야 하는 광역도서관위원회는 국가 도서관정책과 연계하여 지방 도서관 정책의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 하는 법적 기구임
- 따라서 법리적 위상에 따라 당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반인 ‘시·도지사’가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서관법」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 유사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사례를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으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함
-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 관련 및 별도의 장애인복지위원회 자치법규 등을 통해 당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 가운데 위원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모두 시·도지로 규정함. 충청남도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2-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현행)
<p>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u>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u></p> <p>②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u>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p> <p><u>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u></p> <p><u>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p> <p><u>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u></p>

## 제2절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필요

-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역할을 부여받음
- 동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sup>2)</sup> 제5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심의·조정사항)을 보면 제2호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함
- 이를 통해 보면 동일한 「도서관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광역대표도서관과 광역도서관위원회의 별개 기관으로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역할 측면에서 구분되고 있음
  -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시행<sup>3)</sup>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지정 또는 설립한 공립 공공도서관
  -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

2) 전부개정 「도서관법」이 2021년 12월 7일에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은 2022년 12월 8일에 시행

3) 현행 「도서관법」에서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시책'의 해석이 쟁점이 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시책(施策)'은 '어떤 정책을 시행함. 또는 그 정책'으로 '도서관시책'에 대한 의미가 '도서관정책을 시행' 또는 '도서관정책'으로 해석되어 광역대표도서관을 '해당지역 도서관정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또는 '해당지역 도서관정책의 수립과 시행'으로 양분되어 해석되어 질 수 있다. 두 가지 의미의 해석은 광역대표도서관의 정체성에 대해 해당지역 도서관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능을 가지느냐 아니면 수립된 해당지역 도서관정책에 대한 시행 기능만을 가지느냐로 차이를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2006년 12월 4일 개정 「도서관법」의 영문번역을 살펴보면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대해 'formulate and execute the measures of library policy'로 명시하고 있어, '도서관정책의 조치에 대한 수립과 시행'으로 해석되어 진다. 즉, '도서관시책'에 대해 도서관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 된다. 그러나 해당 조문에 대한 현행 「도서관법」에서와 같이 2012년 2월 17일 개정된 「도서관법」의 영문번역을 보면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대해 'formulate and execute library policies'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대표도서관은 해당지역의 '도서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어 진다. 이를 통해 볼 때 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도서관시책'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은 '도서관정책 수립 및 시행'하는 기관으로 법리적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리고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11월 30일 까지 당해 관할지역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도서관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대해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시·도에서는 작성된 시행계획안에 대해 반드시 ‘광역도서관위원회’의 회의 및 사전 내부심의 등을 거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지역도서관 정책 심의 기구로서 역할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규정된 내용에는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됨
- 이와 관련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자치법규를 통해 보면 광역도서관위원회 기능 또는 심의사항과 관련한 규정에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사항에 대해 <표 2-5>에서와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대구의 경우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 외에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과 독서문화진흥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천의 경우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반면, 충남의 경우 위원회의 가능으로서 심의 사항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고 있음. 광역도서관위원회의 회의 일정에 대해서도 회의 개최에 대한 규정 이외에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거나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어 사실상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한 실제적인 심의가 불가능함

〈표 2-4〉 광역도서관위원회 법적 설치 근거: 「도서관법」

도서관법 2021년(현행)	도서관법 시행령 <sup>4)</sup>
<p><u>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이하 “지역도서관”이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둔다.</u></p> <p>②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li> <li>2. 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li> <li>3. 그 밖에 지역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u>제5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심의·조정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li> <li>2. <u>법 제24조에 따른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 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u> ……</li> </ol> <hr/> <p><u>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u>시·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u>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u>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도서관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u>해야 한다.</p>

4) 동법 시행령은 전부개정 「도서관법」(2021년 12월 7일) 공포 1년 후 2022년 12월 8일에 시행됨

<표 2-5>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광역도서관위원회 기능 또는 심의사항 관련 자치법규  
: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현행)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 운영에 관한 조례(현행)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현행)
<p><b>제11조(기능)</b>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4조 2항에 관한 사항</li> <li>2. 대표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li> <li>3. <u>도서관발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li> <li>4. 독서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 정책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b>제9조(심의)</b>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li> <li>2. 그 밖에 도서관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ol>	<p>(관련 조항 없음)</p>
<p><b>제14조(회의)</b>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u>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u></p>	<p><b>제11조(회의)</b> ① 위원장은 <u>위원회의 회의를 소집</u>하고, 그 의장이 된다. ……</p>	<p><b>제10조(회의)</b> ① <u>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u>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p>

- 한편, 광역대표도서관에서 당해 지역의 도서관정책을 수립하고 해당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광역도서관위원회가 「도서관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도록 규정되고 있음
- 이에 해당 조항은 법률상 동법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아래에 국가도서관위원회 관련 규정과 함께 위치하고 있으며, 광역대표도서관의 관장은 「도서관법」 제17조 제4호에 따라 광역도서관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규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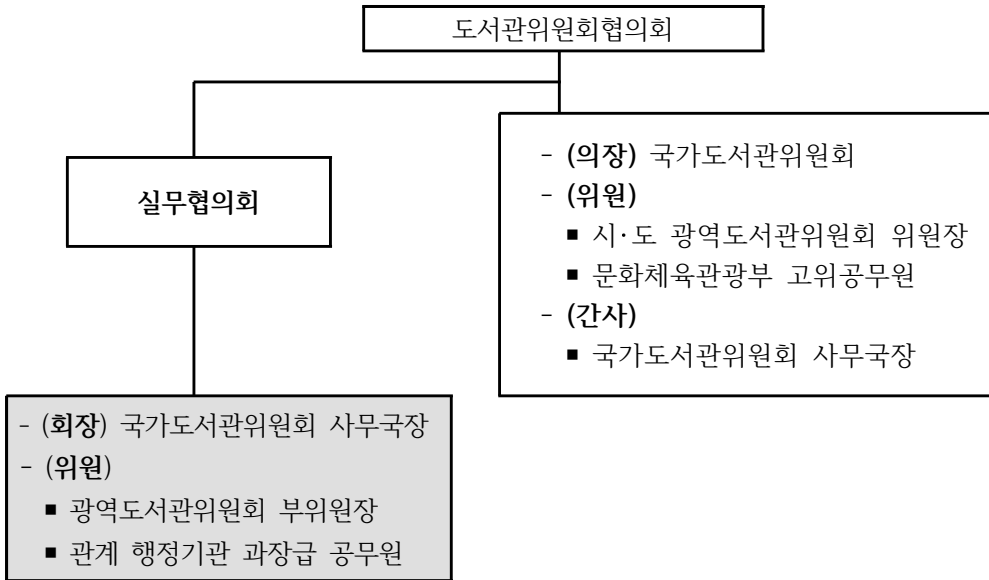


- 즉, 광역도서관위원회가 광역대표도서관 산하 운영위원회 성격의 기구가 아니라 중앙 행정기관의 도서관 정책 기구인 국가도서관위원회와 함께 도서관 정책 심의 기구로서 지방 도서관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로 판단할 수 있음. 그리고 현행 「도서관법」에서는 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에서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광역도서관위원회를 산하 위원회로 규정할 수 없음
- 이를 통해 볼 때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관련 자치법규의 위치 및 내용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법」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근거로 자치법규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표준조례(안)를 통해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공통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제3절 운영 내실화를 위한 체제 정비

- 우리나라의 경우 법치주의 국가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기구 운영을 법률에 근거하고 있음. 이러한 취지에서 광역도서관위원회도 「도서관법」에 따라 설치 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지방자치법규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광역도서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법률적으로 마련되었으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함
- 광역도서관위원회와 관련한 법률적 규정은 「도서관법」 상 1개 조항(제17조)이며, 「동법 시행령」을 통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현, 국가도서관위원회) 심의·조정사항으로 제 5조 제2항에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현, 광역도서관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임. 이외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광역도서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있어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에 관한 내용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음. 또한, 실제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 각종 위원회 관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조례에 따라 운영함

- 이를 통해 보면 광역도서관위원회의 법적 설치 근거는 있으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서관법」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로 규정된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별 내용의 차이 등에 따른 취약성을 가짐
- 한편, 국가도서관위원회 설치에 따라 도서관 정책의 수립·집행과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 교류·협력 및 법·제도 개선 건의 등 현안 논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위원회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 설치 근거로 「도서관법」 제11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호를 따르고 있음. 그러나 「도서관법」에서는 광역도서관위원회에 대한 설치만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설치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국가도서관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으로 광역도서관위원회와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을 뿐임. 이와 관련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예규 제4호로 「도서관위원회협의회 운영규정」을 규정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와 광역도서관위원회 간 정책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서관위원회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하고 있음. 원활한 논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정책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함
- 「도서관위원회협의회 운영규정」을 통해 보면 구성에 있어 의장은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부처 고위공무원과 광역도서관위원회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어 협의회와 관련한 업무가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사무에 해당. 그러나 도서관위원회협의회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를 위한 주요한 창구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광역도서관위원회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음. 다만, 서울의 경우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림 2-1] 도서관위원회협의회 추진체계

- 따라서 광역도서관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법률을 통한 운영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규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해야 함. 이와 함께 도서관위원회협의회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서관법」을 통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하며,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로서 도서관위원회협의회에 관한 사항이 함께 규정하도록 해야 함

## 제4절 시사점

- 광역도서관위원회와 관련하여 「도서관법」, 「도서관법」시행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자치법규 등의 분석을 통해 현재의 광역도서관위원회에 대한 진단을 한 결과 위원회의 법리적 위상 격하와 운영에 따른 실체적 한계를 나타내었으며,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체제의 법적 근거가 취약한 점을 발견함
-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광역도서관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이 도출함

- 첫째,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위상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부시장·부지사에서 시장·도지사로 재상향할 필요가 있음.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당해 지역의 도서관 정책을 포괄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로서 위원회의 위상은 도서관과 관련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역할과 중앙행정기관과의 정책적 협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이에 위원장은 「도서관법」과 당해 지역의 자치법규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반인 시장·도지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시장·도지사의 위원장 규정에 따라 예상되는 실제적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어려움은 부위원장 선임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실무위원회 내지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보완 가능함. 따라서 「도서관법」과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통해 광역도서관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장의 시장·도지사 선임에 관한 사항, 부위원장의 광역대표도서관 관장 외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중 선임에 관한 사항, 위원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속 실무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한 개정이 필요
- 둘째,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위해 「도서관법」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자치법규의 위치와 세부 사항에 대한 개정 필요. 이에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7조에 따라 주요 지방도서관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법적 기구이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를 통해 광역도서관위원회와 광역대표도서관과의 관계 정립, 위원회 주무 부서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일원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체제 정비가 필요. 「도서관법」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해야하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를 통해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항을 도서관 관련 자치법규 또는 별도의 독립된 자치법규를 통해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도서관위원회회 자료에 의하면 2021년 5월 31일 기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4곳(82.4%)에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3곳(17.6%)에서는 미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광역도서관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통해 지방 도서관 정책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보고 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미설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치 및 운영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이며 실제적인 운영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위원회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법」과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로 규정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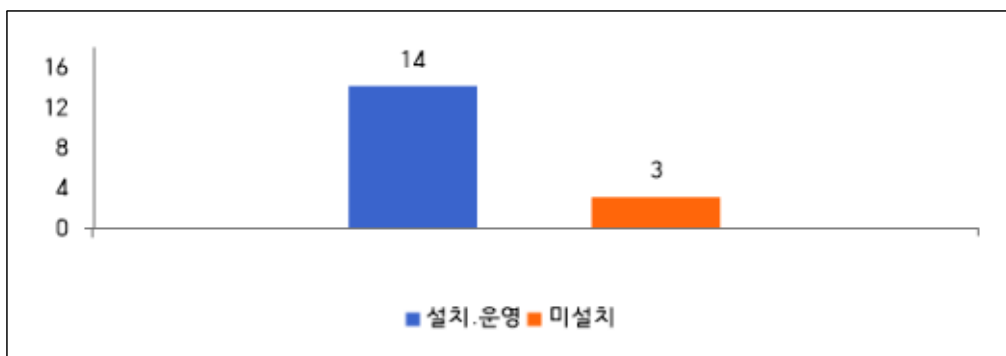
## 제3장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 제1절 광역도서관위원회 기초 현황

-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발전과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법정 기구임
- 이에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 현황<sup>5)</sup>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 설치 현황

- 광역도서관위원회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5월 31일 기준 현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설치·운영 하고 있는 곳은 14곳(82.4%)이며, 설치하지 않고 있는 곳 3곳(17.6%)으로 나타남
  - 설치·운영(14곳)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미설치(3곳) : 세종, 강원, 충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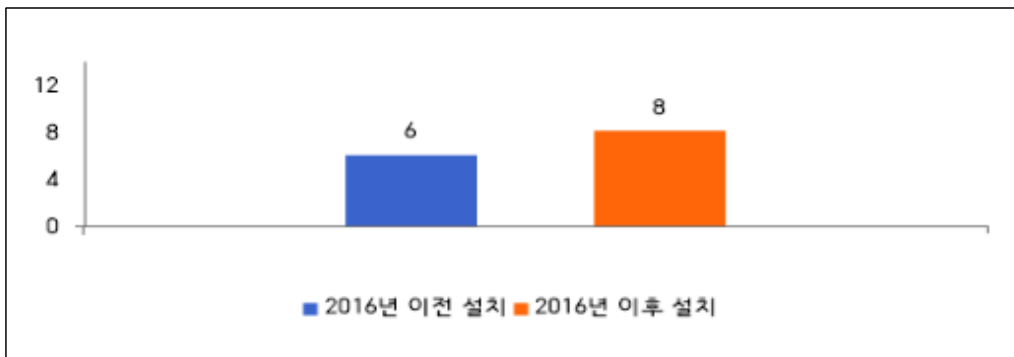
[그림 3-1] 광역도서관위원회 설치 현황

5)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21년 5월 31일 기준 조사자료 참고

- 법적 설치 근거가 마련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역도서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당해 관할지역의 도서관 정책을 마련하고 심의하여 시행함으로써 도서관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식정보격차 해소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방치하고 있는 것임. 이에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조속한 시일 내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통해 관할지역의 도서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2. 설치 시기

- 광역도서관위원회 설치 시기는 위원회가 설치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6곳(42.9%)이 2016년 「도서관법」 개정 이전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며, 8곳(57.1%)은 이후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남
  - 설치일(2016년 이전 6곳) :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 설치일(2016년 이후 8곳) : 부산, 대구, 울산,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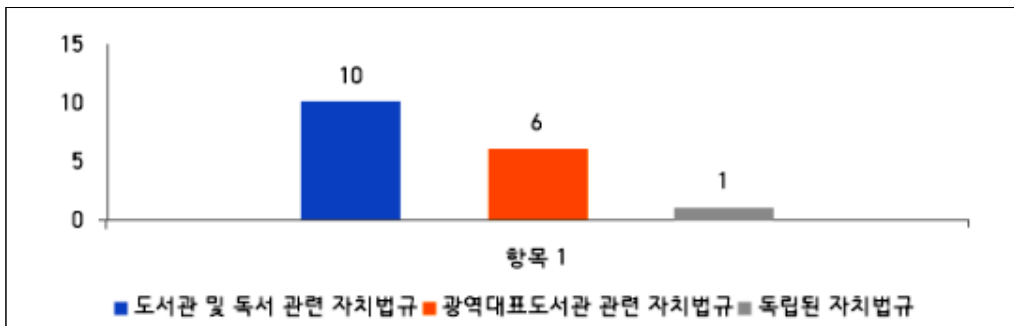


[그림 3-2] 광역도서관위원회 설치 시기

- 2016년 「도서관법」 개정 이후에 광역도서관위원회를 설치한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광역도서관위원회가 법적 설치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된지 10년이 지나서야 위원회를 설치한 것임

### 3. 설치 근거

- 광역도서관위원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 하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법」 제17조 제7항에 근거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고 있음
-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자치법규를 통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자치법규 내 광역도서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곳은 10곳(58.8%)이며, 광역대표도서관 관련 조례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곳이 6곳(35.3%)임. 이외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독립된 자치법규를 규정하고 있는 곳이 1곳(5.9%)으로 나타남
  -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자치법규(10곳)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제주
  - 광역대표도서관 관련 자치법규(6곳) :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독립된 자치법규(1곳) : 대전



[그림 3-3] 광역도서관위원회 설치 근거

- 이 가운데 세종, 강원, 충북은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관련법과 자치법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며,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업무가 광역대표도서관의 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역대표도서관 관련 자치법규를 통해 규정하고 있어 당해 업무에 대한 주무 부서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또한, 광역도서관위원회와 관련한 자치법규 소관 부서 현황을 보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본청으로 규정된 곳은 13곳(76.5%)이며, 지역대표도서관으로 규정된 곳은 4곳(23.5%)로 나타남. 반면, 광역도서관위원회를 실제 운영한 14곳 중 본청은 6곳(42.9%)이며, 지역대표도서관은 8곳(57.1%)로 나타남
  - 자치법규 소관 부서 및 운영 담당부서 일치(10곳)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 자치법규 소관 부서 및 운영 담당부서 미일치(4곳) : 광주, 대전, 울산, 경북
  - 일치여부 제외(3곳) : 세종, 강원, 충북

<표 3-1> 시·도별 광역도서관위원회 현황

구분	지역	설치 현황		설치시기 (2016년 기준)		설치 근거 (자치법규)	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소관 부서		위원회 운영 담당 부서	
		유	무	이 전	이 후		본청	광역 대표 도서관	본청	광역 대표 도서관
1	서울	○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6조		○		○
2	부산	○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4조~제18조	○		○	
3	대구	○			○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0조	○		○	
4	인천	○		○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	
5	광주	○		○		광주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6조	○			○
6	대전	○		○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
7	울산	○			○	울산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			○
8	세종			-	-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0조	○		-	-
9	경기	○		○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4조	○		○	
10	강원			-	-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7조	○		-	-
11	충북			-	-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		-	-



구분	지역	설치 현황		설치시기 (2016년 기준)		설치 근거 (자치법규)	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소관 부서		위원회 운영 담당 부서	
		유	무	이 전	이 후		본청	광역 대표 도서관	본청	광역 대표 도서관
12	충남	○			○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6조		○		○
13	전북	○			○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		○	
14	전남	○		○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
15	경북	○			○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			○
16	경남	○			○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		○
17	제주	○			○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		○	
계		14	3	6	8		13	4	6	8

- 한편,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행정기구 설치 등에 관한 자치법규를 통해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사무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 현황을 조사한 결과 규정하고 있는 곳은 6곳(35.8%)이며, 규정되고 있지 않는 곳은 11곳(64.7%)으로 나타남. 자치법규로 규정되고 있는 6곳 중 전북은 본청 내 도서관 관련 부서에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5곳은 광역대표도서관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지역도서관 정책의 심의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행정기구 설치 등에 관한 자치법규를 통해 본청의 도서관 관련 부서의 사무로 분명히 분장되는 것이 바람직함

<표 3-2> 시·도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내 광역도서관위원회 소관 업무 규정 현황

구분	지역	규정하고 있음		규정하고 있지 않음
		본청	도서관 (사업소)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7	울산		○	
8	세종		○	
9	경기			○
10	강원			○
11	충북			○
12	충남			○
13	전북	○		
14	전남			○
15	경북		○	
16	경남		○	
17	제주			○
계		1	5	11

## 제2절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도서관위원회가 2021년 5월 31일 기준으로 수집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현황과 「도서관법」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조사함

### 1. 위원회 구성

-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7조 제3항~제6항에 근거하여 자치법규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과 위원 인원, 위촉 위원에 관한 자격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첫째, 위원장은 「도서관법」에 따라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부시장·부지사를 선임하고 있으나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전북을 제외하고 당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을 선임하고 있음. 경기도의 경우 현재 광역대표도서관으로 수원 선경도서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는 경기도 내 도서관정책과와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에서 분담하여 진행하고 있어 부위원장으로 광역대표도서관장이 아니라 도서관정책과 소관 국(局)인 평생교육국장을 선임하고 있음. 그리고 전북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전북의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전북도청도서관의 관장을 겸직하고 있음. 광역도서관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곳의 사유로는 광역대표도서관의 미지정으로 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부족하거나 설치에 따른 한계 등으로 조사됨
- 둘째,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동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가 구성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인원은 13.9명이며, 당연직 3.8명과 위촉직 10.1명으로 조사됨
- 셋째, 위원회 위원으로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있음. 당연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이외 「도서관법」 상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조사에 따르면 관련 자치법규를 통해 당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교육청 도서관 업무 담당 국장·과장과 광역대표도서관 담당 본부장·국장·과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부위원장의 직급 보다 상위 직급의 당연직 위원을 구성하고

있는 곳은 서울, 부산, 광주로 조사됨. 그리고 경기도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운영하고는 있으나 실제적인 역할은 본청 내 도서관정책과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관할 조직인 국(局)인 평생교육국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됨. 그러나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대리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점에서 위원 구성 위계 상 당연직 위원에 대한 규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함. 위촉직의 경우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종별 전문가,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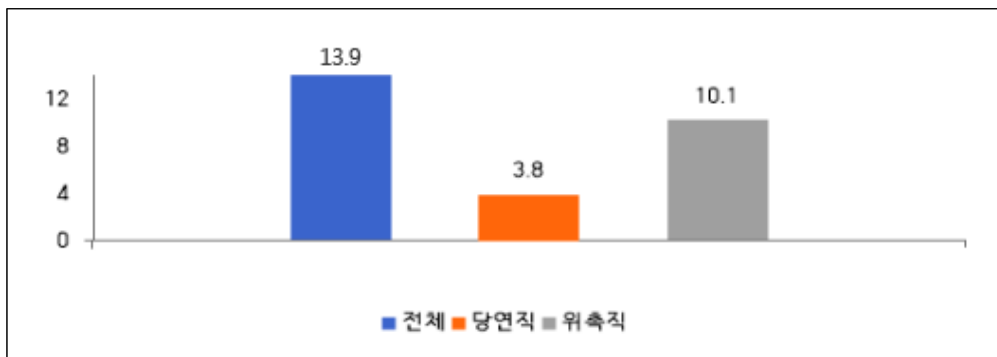
- 넷째,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방도서관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방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도서관 관종별 협력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을 하는 것이 필요. 이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교육청 14곳(100.0%), 공공도서관 11곳(78.6%), 대학도서관 8곳(57.1%), 학교도서관 5곳(35.7%), 전문도서관 4곳(28.6%), 작은도서관 9곳(64.3%), 취약계층 7곳(50.0%) 으로 나타남.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만 도서관 협력 관련 전분야를 포함한 위원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 시·도별 광역도서관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구분	지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구성			비고
				계	당연직	위촉직	
1	서울	행정1부시장	서울도서관장	16	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연직) 행정1부시장, <u>문화본부장, 교육청 도서관 업무담당 국장</u>, 서울도서관장</li> <li>• (위촉직) 시의원 1명, 도서관협회 1명, 국립 1명, 공공 1명, 대학 1명, 전문 2명, 학교 1명, 출판 1명, 학계전문가 2명, 현장전문가 1명</li> </ul>
2	부산	행정부시장	부산도서관장	14	4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연직) 행정부시장, <u>행정자치국장, 교육청 교육청 교육국장</u>, 부산도서관장</li> <li>• (위촉직) 시의원 2명, 학계전문가 3명, 현장전문가 2명, 공공 2명, 작은 1명,</li> </ul>
3	대구	행정부시장	대표도서관장	15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연직) 행정부시장, 대표도서관장, 대구시 도서관 업무담당 국장, 대구시 시교육청 도서관 업무담당 국장</li> <li>• (위촉직) 공공(대학)도서관 4명, 학계 2명, 언론 1명, 독서단체 등 4명</li> </ul>

구분	지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구성			비고
				계	당연직	위촉직	
4	인천	행정부시장	미추홀 도서관장	12	4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연직) 행정부시장, 미추홀도서관장, 시 도서관정책과장, 교육청 미래학교 혁신과장</li> <li>• (위촉직) 시의원 1, 학계 3명, 공공 1명, 대학 1명, 작은 1명, 기타 2명</li> </ul>
5	광주	문화경제부 시장	시립도서관장	15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연직) 문화경제부시장, <b>문화관광체육실장</b>, 시립도서관장, <b>시교육청 교육국장</b></li> <li>• (위촉직) 학계 4, 현장전문가 4, 언론계 1, 시민사회단체 1, 독서단체 1</li> </ul>
6	대전	행정부시장	한밭도서관장	12	4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연직) 행정부시장, 한밭도서관장, 문화예술정책과장, 교육청 교육복지 안전과장</li> <li>• (위촉직) 학계 3명, 독서운동 등 현장 전문가 3명, 정보화 및 문화분야 2명</li> </ul>
7	울산	행정부시장	울산도서관장	13	4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연직) 행정부시장, 울산도서관장, 시·교육청 도서관정책과장</li> <li>• (위촉직) 공공 3, 교수 1, 대학 2, 언론 1, 전문 1, 시의원 1</li> </ul>
8	세종	미설치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유) 광역대표도서관 미지정에 따라 위원회 설치 한계</li> </ul>
9	경기	행정1부지사	평생교육국장	15	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연직) 경기도 행정1부지사, 평생 교육국장</li> <li>• (위촉직) 현장전문가 9명, 공무원 2명, 도의원 2명</li> </ul>
10	강원	미설치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유) 광역대표도서관 지정에 운영 따라 위원회 설치 필요성 제한</li> </ul>
11	충북	미설치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유) 광역대표도서관 지정에 운영 따라 위원회 설치 필요성 제한</li> </ul>
12	충남	문화체육부 지사	충남도서관장	15	3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연직)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충남도서관장, 충청남도교육청 교육 혁신과장</li> <li>• (위촉직) 학계 4명, 공공 3명, 대학 1명, 학교 1명, 작은 1명, 취약 2명</li> </ul>
13	전북	행정부지사	전북도청 도서관장	15	3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연직) 행정부지사, 문화체육관광 국장(광역대표도서관 겸직),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li> <li>• (위촉직) 도의원 1, 도서관분야 5, 독서진흥분야 2, 도서관건축 1, 전북 자료보존 1, 학계전문가 2, 기자 1 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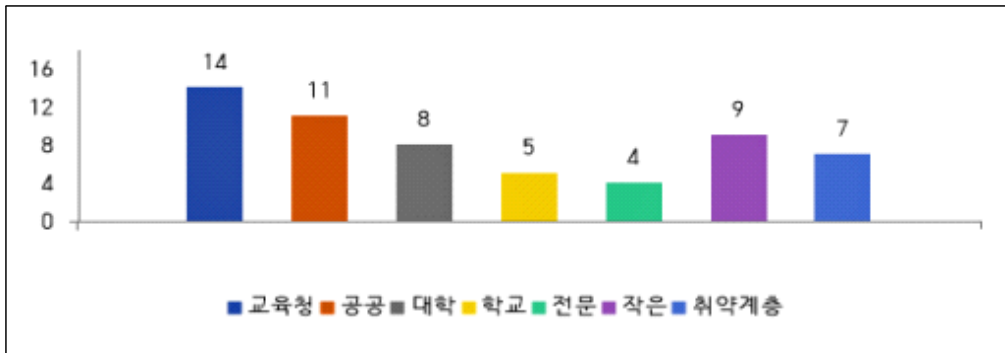
구분	지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구성			비고
				계	당연직	위촉직	
14	전남	행정부지사	대표도서관장	14	5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연직) 행정부지사, 대표도서관장 1명, 도 도서관정책과장 1명, 도 교육청 도서관정책담당 과장 1명, 도의회 의원 1명</li> <li>(위촉직) 현장전문가 3명, 학계 2명, 분야별 전문가 4명</li> </ul>
15	경북	행정부지사	경북도서관장	13	4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연직) 행정부지사, 경북도서관장, 문화산업과장, 도교육청 창의인재과장</li> <li>(위촉직) 도의원 1명, 도서관협회 1명, 공공도서관 2명, 대학도서관 1명, 전문도서관 1명, 전문가 3명</li> </ul>
16	경남	행정부지사	경남대표도서관장	15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연직) 행정부지사, 경남대표도서관장, 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장, 경남대표도서관 도서관정책과장</li> <li>(위촉직) 도의회 1명, 유관기관 6명, 학계 등 전문가 4명</li> </ul>
17	제주	행정부지사	한라도서관장	11	4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연직) 행정부지사, 대표도서관장, 도 도서관업무 담당과장, 도 교육청 도서관업무 담당과장</li> <li>(위촉직) 도의원 1명, 문학 4명, 장애인 1명, 연구 1명</li> </ul>
평균				13.9	3.8	10.1	



[그림 3-4] 시·도별 광역도서관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평균)

&lt;표 3-4&gt; 시·도별 광역도서관위원회 도서관 협력 관련 분야 현황

구분	지역	도서관 협력 관련 주요 분야						취약계층
		교육청	도서관 현장					
			공공	대학	학교	전문	작은	
1	서울	○	○	○	○	○	○	○
2	부산	○	○				○	
3	대구	○	○	○				
4	인천	○	○	○			○	
5	광주	○	○				○	
6	대전	○						
7	울산	○	○	○			○	
8	세종	-	-	-	-	-	-	-
9	경기	○			○	○	○	○
10	강원	-	-	-	-	-	-	-
11	충북	-	-	-	-	-	-	-
12	충남	○	○	○	○		○	○
13	전북	○	○	○		○		
14	전남	○	○		○			○
15	경북	○	○	○		○		○
16	경남	○	○	○	○		○	○
17	제주	○					○	○
계		14	11	8	5	4	9	7



[그림 3-5] 시·도별 광역도서관위원회 도서관 협력 관련 분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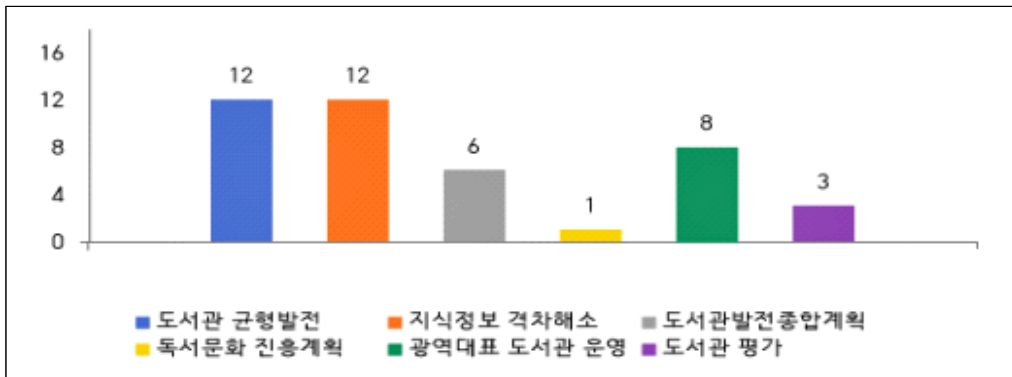
## 2. 주요 기능

-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7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짐
  - 지방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지방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를 근거로 광역도서관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3곳을 포함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자치법규를 통해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 규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2곳(70.6%)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5곳(29.4)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둘째, 자치법규를 통해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 12곳 중 주요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도서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지역도서관 균형발전과 지식정보격차에 관한 사항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도서관문화진흥계획, 광역대표도서관 운영, 도서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도서관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균형발전과 지식정보격차해소에 관해서는 각각 12곳(100.0%)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음. 이외 광역대표도서관 운영에 관해서는 8곳(66.7%)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6곳(50.0%), 도서관 평가 3곳(25.0%), 독서문화진흥계획 1곳(8.3%)으로 조사됨. 그러나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 법률상에 규정된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자치법규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도서관 정책 해당하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는 6곳에(50.0%)에 불과함. 따라서 위원회가 당해 지역도서관 정책을 포괄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 내 위원회의 규정으로 보다 명확한 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표 3-5〉 시·도별 자치법규 내 광역도서관위원회 기능 및 내용 현황

구분	지역	기능 여부	주요 기능 내용					
			도서관 균형발전	지식정보 격차해소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독서문화 진흥계획	광역대표 도서관 운영	도서관 평가
1	서울	○	○	○	○		○	
2	부산		-	-	-	-	-	-
3	대구	○	○	○	○	○	○	
4	인천	○	○	○				
5	광주	○	○	○	○			○
6	대전		-	-	-	-	-	-
7	울산	○	○	○			○	
8	세종	○	○	○	○			○
9	경기	○	○	○	○			○
10	강원	○	○	○			○	
11	충북		-	-	-	-	-	-
12	충남		-	-	-	-	-	-
13	전북	○	○	○			○	
14	전남	○	○	○			○	
15	경북	○	○	○			○	
16	경남		-	-	-	-	-	-
17	제주	○	○	○	○		○	
계		12	12	12	6	1	8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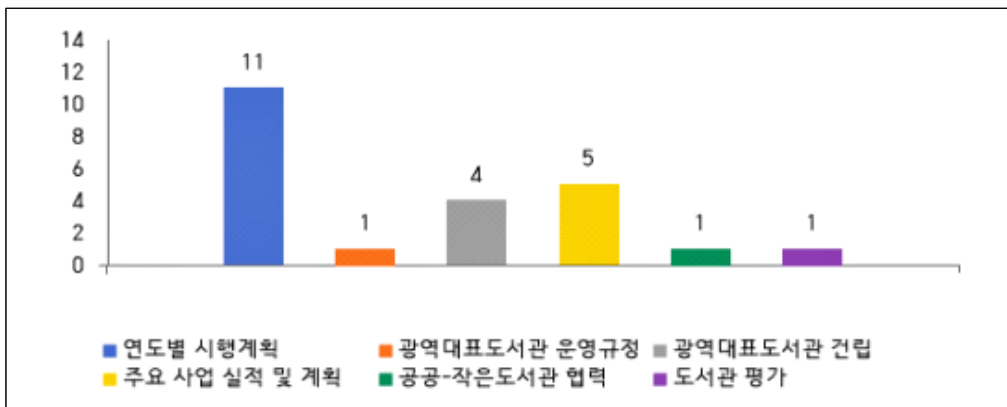
[그림 3-6] 시·도별 자치법규 내 광역도서관위원회 위원 기능 및 내용 현황

### 3. 회의 개최

-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법규를 통해 회의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법규에 따르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이를 근거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위원회가 설치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위원회 회의 개최와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자치법규를 통해 위원회 정기회의와 관련하여 개최 횟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곳은 11곳(64.7%)이며 이 가운데 4곳(23.5%)은 연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7곳(41.2%)는 연간 1회 개최하도록 규정되고 있음. 또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6곳(35.3%)은 자치법규를 통해 회의 개최 횟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둘째, 최근 2년(2019년~2020년) 동안 대면·비대면 포함해 광역도서관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2019년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14곳 중 11곳(78.6%)이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에는 9곳(64.3%)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됨. 다만, 대구는 위원회가 2019년 12월에 설치되었으며, 경북은 2020년 1월에 설치되어 회의 개최 실적이 당해 기간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인천은 2010년 4월에 위원회가 설치되었음에도 최근 2년동안 회의 개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셋째, 국가도서관위원회를 통해 제공받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에 대하여 주요 안건을 분석한 결과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안건으로 가장 많이 심의한 사항은 「도서관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며 11곳(78.6%)에서 심의함. 이외 당해 광역대표도서관의 주요 사업 실적 및 계획이 5곳(35.7%), 광역대표도서관 건립 4곳(28.6%), 광역대표도서관 운영규정·공공·작은도서관 협력·도서관 평가에 대해 각각 1곳(7.1%) 순으로 나타남. 이는 「도서관법」 과 관련한 지방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심의해야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lt;표 3-6&gt; 시·도별 광역도서관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구분	지역	회의 개최 (정기) 횟수	설치일 (년/월)	회의 개최 실적 (최근 2년)		회의 주요 안건					
				2019년	2020년	연도별 시행 계획	광역대표 도서관 운영규정	광역대표 도서관 건립	주요 사업 실적 및 계획	공공-작은 협력	도서관 평가
1	서울	연1회 이상	'12.12	2	1	○	○	○	○		
2	부산	없음	'18.05	1	1	○			○		
3	대구	연1회	'19.12	0	0	○			○		
4	인천	없음	'10.04	0	0						
5	광주	연1회	'11.11	2	1				○	○	
6	대전	연1회 이상	'08.12	1	1	○		○			
7	울산	연1회 이상	'19.03	1	0	○					
8	세종	연1회 이상	-	-	-	-	-	-	-	-	-
9	경기	연1회	'08.09	1	1	○		○	○		○
10	강원	없음	-	-	-	-	-	-	-	-	-
11	충북	연1회	-	-	-	-	-	-	-	-	-
12	충남	없음	'18.03	2	2	○					
13	전북	연1회	'19.12	1	1	○		○			
14	전남	연1회	'12.04	1	1	○					
15	경북	연1회	'20.01	0	0						
16	경남	없음	'18.12	1	0	○					
17	제주	없음	'19.05	1	0	○					
계				14	9	11	1	4	5	1	1



[그림 3-7] 시·도별 광역도서관위원회 회의 주요 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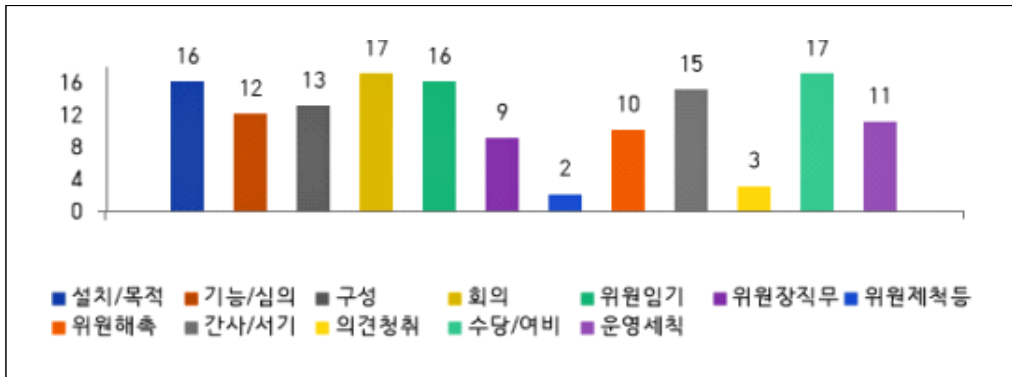
#### 4. 관련 자치법규

- 「도서관법」 제17조 제7항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앞서 조사한 결과에서와 같이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자치법규, 광역대표도서관 관련 자치법규, 독립된 자치법규 등에 따라 당해 지역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광역도서관위원회에 관한 자치법규 내용을 주요 조항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광역도서관위원회와 관련하여 별도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있는 대전을 제외하고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내 독립된 장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울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위원회 관련 사무가 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가 아님에도 광역대표도서관 관련 자치법규 내에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 관련 자치법규 없이 광역대표도서관에 관한 자치법규만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둘째,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한 자치법규 조항으로 위원회 회의 구분과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참석 수당·여비가 각각 17곳(100.0%)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설치 및 목적과 위원회 위원 임기가 각각 16곳(94.1%), 위원회 운영에 따른 간사 및 서기가 15곳(88.2%), 위원 구성 13곳(76.5%), 위원회 기능 및 심의가 12곳(70.6%), 세부 운영 규정 및 세칙이 11곳(70.6%), 의원 해촉이 10곳(58.8%), 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직무가 9곳(52.9%) 순으로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제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곳은 2곳(11.8%)로 가장 적었으며, 다음으로 위원회 운영에 따른 관계자 의견청취가 3곳(17.6%) 순으로 나타남. 특히, 위원회 설치 및 목적, 기능 및 심의, 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해서는 「도서관법」에서 광역도서관위원회와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 가운데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현황을 통해 볼 때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도서관법」에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이 제각각이며, 필수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자치법규로 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lt;표 3-7&gt; 시·도별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현황

구분	지역	위치	주요 조항												
			목적	설치	가능/심의	구성	회의	위원 입기	위원장 직무	위원 제척 등	위원 해촉	간사/ 서기	의견 청취	수당/ 여비	운영 세칙
1	서울	제2장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	○	○	○	○			○	○	○	○
2	부산	제6장 도서관정보 서비스위원회						○	○			○	○	○	○
3	대구	제4장 도서관정보 서비스위원회		○	○	○	○	○				○		○	○
4	인천	제3장 도서관정보 서비스위원회		○	○	○	○				○		○	○	
5	광주	제5장 광주광역시 도서관정보 서비스위원회		○	○	○	○	○			○		○	○	
6	대전		○					○	○			○	○	○	○
7	울산	제3장 도서관정보 서비스위원회		○	○	○	○	○	○			○		○	
8	세종	제4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정보 서비스위원회		○	○			○	○	○	○	○		○	○
9	경기	제2장 경기도 도서관정보 서비스위원회		○	○	○	○	○	○			○		○	○
10	강원	제3장 강원도 도서관정보 서비스위원회		○	○	○	○	○			○			○	
11	충북	제3장 충청북도 도서관정보 서비스위원회		○				○	○			○		○	○
12	충남	제3장 충청남도 도서관정보 서비스위원회		○		○	○	○			○	○		○	

구분	지역	위치	주요 조항													
			목적	설치	기능/심의	구성	회의	위원입기	위원장직무	위원제척등	위원해촉	간사/서기	의견청취	수당/여비	운영세칙	
13	전북	제3장 도서관정보 서비스위원회		○	○	○	○	○					○		○	○
14	전남	제3장 전라남도 도서관정보 서비스위원회		○	○	○	○	○	○				○	○		○
15	경북	제3장 경상북도 도서관정보 서비스위원회		○	○	○	○	○	○				○	○		○
16	경남	제3장 경상남도 도서관정보 서비스위원회		○		○	○	○	○				○	○		○
17	제주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정보 서비스위원회		○	○	○	○	○	○				○	○		○
계			1	15	12	13	17	16	9	2	10	15	3	17	11	



[그림 3-8] 시·도별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주요 조항 현황

### 제3절 시사점

-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기초 현황과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첫째,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 간 원활한 업무 협조 및 위원 활동을 위해 동일한 수준의 직급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앞서 광역도서관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에서와 같이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구, 경기, 전북의 경우 광역대표도서관 건립에 따라 관장의 직급이 변경될 수 있음. 이에 위원회 부위원장인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의 직급이 현재와 같이 광역대표도서관의 조직 및 시설 규모인 점을 고려할 때 광역지방자치단체 과장급에 준하므로 당연직 위원의 직급 즉 관계 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 다만 광역대표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위해서는 현재의 과(科) 단위 사업소 수준에서는 제역할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에 국(局) 단위 조직 확대 개편을 통한 운영이 필요하며, 이때 광역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
- 둘째,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정체성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주무 담당 부서를 명확히 해야 함. 현재는 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6곳(42.9%)은 본청 내 도서관 정책 담당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8곳(57.1%)은 광역대표도서관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는 「도서관법」 상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당 업무를 분장하고 있기 때문임. 현행 「도서관법」에서는 광역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현 광역도서관위원회)를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아래 국가도서관위원회에 관한 사항 다음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서관 정책 업무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음.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통해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치법규를 통해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제역할을 위해 다양한 관중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도서관 정책을 심의 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가운데 위촉직 위원의 선입에 있어 이를 반영한 위원 구성을 하도록 노력해야 함. 현재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에 따라 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지역도서관 정책의 포괄적인 심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다양한 관중의 도서관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창구로써 위촉직 위원 선임에 있어 관중별 안배를 통한 위원 선임이 필요. 앞서 광역도서관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도서관 협력을 위한 관련 분야에 대한 현황에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14곳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전 관중을 포용하는 측면에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곳은 서울 뿐이며, 지식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주요한 대상인 취약계층 고려한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7곳(50.0%)에서만 관련하여 위원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외 학교도서관은 5곳(35.7%)이며 전문도서관 4곳(28.6%)에서 관련한 위원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있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을 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광역도서관위원회와 관련한 자치법규를 통해 「도서관법」에 규정된 지역도서관 정책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광역도서관위원회 기능 및 내용에 관한 현황을 통해 보면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균형발전과 지식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내용 중심으로 주요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산, 대전, 충북, 충남, 경남은 자치법규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14곳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회의 개최 실적에서와 같이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심의가 11곳(78.6%)로 가장 많으며 이외는 주요 사업 실적 및 계획 5곳(35.7%), 광역대표도서관건립 4곳(2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통해 광역도서관위원회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섯째,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관련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 앞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현황에서와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법규를 통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리고 부산, 대전, 충북, 충남, 경남은 자치법규에서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관해서 조차 제대로 규정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정체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능 및 심의에 관해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2곳(70.6%)만이 관련 자치법규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법」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함으로써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표준 자치법규(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인 운영에 관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를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제4장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표적집단면접

-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전문가 그룹과 광역도서관위원회 당연직 부위원장인 광역대표도서관장 그룹을 대상으로 의견과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함. 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유지 준수와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직접 대면 및 전화 통화를 통해 보완하여 의견과 자문을 받음

### 제1절 전문가 그룹

#### 1. 전문가 그룹 대상 표적집단면접 개요

- 전문가 그룹 대상 표적집단면접은 광역대표도서관 및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연구자 1명, 도서관 관계 법제도 연구자 1명,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 및 광역도서관위원회 위원 1명 등 총 3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
- 전문가 그룹 의견 및 자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및 구성
  -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과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 관계
  - 도서관위원회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 조사 기간은 2021년 10월 15일~10월 22일 까지이며, 조사 방법은 서면으로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 직접 대면과 전화를 통해 보완을 함

## 2. 전문가 그룹 대상 표적집단면접 결과

### ①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및 구성

-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지역도서관 정책을 총괄 심의하는 기구이며 위원장으로 당해 광역지방자치단체 부시장·부지사이기 때문에 해당 근거가 「도서관법」에서와 같이 자치법규를 통해 광역대표도서관의 사무가 아닌 지역도서관 정책 업무의 정체성을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국가도서관위원회와의 실질적인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도서관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기 위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이 중요. 이에 지역도서관 정책 의사결정권자의 참여를 위해 현재의 위원장인 부시장·부지사를 시장·도지사로 격상할 필요
- 한편, 광역도서관위원회 부위원장인 광역대표도서관장이 지역도서관 정책 실무책임자로서 지위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규정할 필요

-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시도의 도서관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제2장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전문가 A)

- 광역대표도서관으로 이관하면, 현재의 위원장인 부지사 또는 부시장에서 격하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함. 이런 결과는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을 부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전문가 A)

- 국가도서관위원회와의 실질적인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단체장들이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면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도서관정책 수립과 실행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전문가 B)

- 광역대표도서관장이 부위원장으로서는 실질적 지역의 도서관정책의 실무책임자로서 광역자치단체의 도서관정책의 실무를 주도하는 방식으로 관장의 지위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요망됨(전문가 C)

②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도서관법」 상에 규정된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다소 광범위하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광역도서관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도서관위원회와 같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분명히 할 필요

-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세부내용이 표현되어야 함. 현재는 ... 너무 광범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의 규정으로는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역할과 심의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함(전문가 A)

-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국가도서관위원회 경우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담는 것은 어떨지요.(전문가 B)

- (예)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와 의결의 역할을 부여(전문가 C)

③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과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 관계

- 지역도서관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것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이며,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이러한 지역도서관 정책을 포괄적으로 심의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당해 업무를 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가 아니라 현행과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지역도서관 정책 대한 심의 및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적인 지역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은 광역대표도서관이 이행하는 방안 제안
- 이와 달리 실제적인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을 위해 광역도서관위원회 업무를 광역대표도서관으로 이관할 경우 위원회의 위상을 고려하여 광역대표도서관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안될 수 있음

- 현재 위원회의 장은 부지사나 부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대표도서관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함. 또한 현재 시도의 도서관 연차별계획 수립과 보고 등도 시도지사의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당해 시도의 도서관 연차별 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광역대표도서관에 두어서는 권한 체계상 올바르지 않으며, 이런 이유로도 위원회는 시도 직속에 두어야 함 (전문가 A)

- 위원회의 주체를 광역대표도서관으로 이관이 도서관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역의 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위원회의 광역대표도서관으로의 이관은 위원회의 위상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표도서관장의 직급 및 역할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음(전문가 B)

- 광역대표도서관장이 광역자치단체 도서관정책의 실무책임자라는 방식으로 그 지위와 역할을 높이고, 지역도서관서비스 위원회는 시도도서관정책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자문 권고하는 역할과 함께 광역대표도서관의 사업의 계획과 결과를 승인하는 부차적 역할을 두는 방안(전문가 C)

#### ④ 도서관위원회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 도서관위원회협의회 운영은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도서관위원회협의회와의 상호 교류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 및 모델이 될 것임
- 이에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의 구성과 목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실제적인 활동을 위해 정기회의 개최 필요. 그리고 실무협의회의 경우 지역 도서관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확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도서관위원회협의회 산하 실무협의회의 구성은 광역도서관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아닌 광역대표도서관장을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임

- 위원회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목적의 설정이 먼저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아울러 위원회만 구성하고 위원회의 내실화 및 운영의 효율화가 매우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내실화 및 운영의 효율화를 먼저 다지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사료됨(전문가 A)

- 실무협의회는 도서관 현장의 의견 수렴 등 현장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협의회, 그리고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전달되어 국가도서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은 광역도서관위원회 부위원장 보다는 광역대표도서관의 관장을 포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됨.(전문가 B)

- 광역대표도서관장을 중심으로 지역도서관정책을 전국단위에서 조정하고 협력하는 기회로서, 국가도서관위원회와 지역도서관정책을 협의하는 유익한 채널로서 새로운 협력모델이 기대됩니다.(전문가 C)

#### ⑤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위해 「도서관법」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통해 그 권한과 역할, 기능 등의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 범위에는 당해 지역 내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다양한 관중을 포함해야 함
- 이를 통해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지역도서관 정책의 실무책임자인 광역대표도서관장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도서관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
- 한편, 광역도서관위원회(현,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명칭에 따른 혼란이 있어 이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명칭도 너무 혼란스러운 면이 있어 위원회 명칭의 변경(예를 들면, 지방도서관위원회)도 검토할 만함. 또한 지방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기능 등의 구체적 명시도 필요함(전문가 A)

- 현행의 지방교육자치단체로서 교육청이 소관하고 있는 공공 도서관활동에 대한 시도 광역대표도서관의 지휘체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부여하며, 부위원장으로서 광역대표도서관장의 지위와 책임을 명시적으로 조문화하여, 광역대표도서관장 중심의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체계의 정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전문가 C)

## 제2절 광역대표도서관 관장 그룹

### 1. 광역대표도서관 관장 그룹 대상 표적집단면접 개요

- 「도서관법」에 따라 광역도서관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는 광역대표도서관 관장 그룹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 진행함. 이에 광역대표도서관이 설치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에 대하여 서면을 통한 면접을 요청 하였으며, 회수된 10개의 답변서를 분석하고자 함.
- 광역대표도서관 관장 그룹 의견 및 자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및 구성
  -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과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 관계
  - 도서관위원회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 조사 기간은 2021년 10월 15일~10월 29일 까지이며, 조사 방법은 서면으로 진행함

## 2. 광역대표도서관 관장 그룹 대상 표적집단면접 결과

### ①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및 구성

-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은 중앙행정기관의 도서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에 적합하며, 운영에 있어 부시장·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도서관 정책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것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
-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으로 부위원장인 광역대표도서관 관장과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과의 직급에 따른 격차가 있는 경우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되며, 부위원장은 필요시 위원장의 임무를 위임받아 수행해야 함으로 과장급인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의 직급을 상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또한,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실제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아니라 위원회 역할에 대한 공감대 및 인식을 바탕으로 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이해와 경험을 겸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가 요구됨

- 광역도서관위원회 역할에 대한 공감대 및 인식이 부족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회지도층 영입이 되지 않았고,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이 대부분임(광역대표도서관 관장 A)

- 추진체계는 적절하다 생각되나, 위원회의 부위원장인 대표도서관장의 직급이 위원(국장)보다 낮아 어색한 면이 있음(광역대표도서관 관장 B)

-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실질적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을 현행 부시장에서 광역대표도서관 소관 국장 혹은 광역대표도서관장으로 권한 위임하는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광역대표도서관 관장 G)

- 광역도서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법체계상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논리적인 측면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광역대표도서관에서 할 수 있도록 명문의 법규정으로 명확히하여 할 것임.(광역대표도서관 관장 D)

## ②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와의 협력 및 거버넌스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도서관 정책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지역도서관 정책의 심의를 위해서는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회의 구분 및 운영 횟수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강제성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방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정보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정책 발굴 및 추진체계 등 도서관 또는 도서관계 내부로만 해결할 수 없는 실행위원회로서의 역할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광역대표 도서관 관장 A)

- 지역 내 관종별 도서관의 발전 방향 및 도서관 정책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구이며,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 위원회 개최를 통해 지역도서관 정책을 점검하고, 타지역 우수 정책 (정보)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함(광역대표 도서관 관장 C)

- 현행의 법규정에 위원회의 기능과 심의 사항에 큰 문제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17개 광역시·도에 구성하지 않은 것도 있으므로 제24조 제1항에서 ‘~둔다’를 좀 더 강력하게 ‘~두어야 한다’로 해서 반드시 광역시·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함 (광역대표도서관 관장 D)

## ③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과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 관계

- 지역도서관 정책을 추진 하는데 있어 광역대표도서관과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현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위원회의 업무를 도서관 정책을 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서 담당하거나 광역대표도서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이는 국가도서관정책과 연계한 지역도서관 정책의 추진에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며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실제적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역도서관 정책 업무 주체에서 광역도서관위원회와 광역대표도서관을 함께 관할할 수 있도록 일원화 필요

- 이에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됨
  - 광역도서관위원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본청 내 도서관 정책 담당 부서에서 담당하며 지역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역할을 하고, 광역대표도서관과는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을 위한 일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이러한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본청 내 도서관 정책 담당 부서에 대한 인력 보강 필수
  - 광역대표도서관에서 광역도서관위원회를 운영하되 대표성을 고려하여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도서관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는 체계로 구성. 단, 위원회의 지역도서관 정책 대한 원활한 심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부위원장인 광역대표도서관의 관장에 대한 위임을 통한 권한 강화 또는 직급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정보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정책 발굴 및 추진체계 등 도서관 또는 도서관계 내부로만 해결할 수 없는 실행위원회로서의 역할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광역대표도서관 관장 A)

- 본청에 정책을 위한 전담인력 또는 기구를 보완하여 지역도서관정책 일괄 추진하고 광역도서관위원회를 운영하는 방법과 광역대표도서관(현재는 사업소)이 시의 직속기관(예를 들면 인재개발원)으로 변경되어 광역대표도서관에서 도서관 정책추진을 일괄할 수 상황이 된다면 광역도서관위원회도 광역대표도서관 업무로 추진하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광역대표도서관 관장 B)

- 지역마다의 특성에 따라 지역의 도서관 정책을 맡고 있는 부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어디서 담당하느냐에 따라, 본청 혹은 대표도서관에서 위원회 운영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광역대표도서관 관장 G)

- 광역대표도서관에서 수립, 시행하고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관계는 적절하다고 생각함(광역대표도서관 관장 H)

④ 도서관위원회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 도서관위원회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있어 광역도서관위원회의 부위원장인 광역대표도서관장을 선임하고 있어 기존의 광역대표도서관장 회의와의 차별성을 검토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필요. 이에 따라 기존의 광역대표도서관 관장 회의를 확대하여 통합해 실무협의회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또한, 도서관위원회협의회 회의에 광역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부지사의 참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부위원장인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의 대리 참석하고 있어 실무협의회와의 차별성 검토하여 운영할 필요
-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부지사인 광역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의 도서관위원회협의회 운영 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 도서관 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협의 및 교류를 위해서는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 중심의 운영 필요

- 광역시도의 도서관 사업 비중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부시장, 부지사 등의 참여를 얼마나 견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실무협의회는 대표도서관장 회의와 어떤 차별성이 도모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함(광역대표도서관 관장 A)

- 도서관위원회협의회 위원인 부시장님이 협의회에 참석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도서관위원회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시 실무협의회 참석대상인 광역대표도서관장이 참석하게 되어 도서관위원회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의 차별성이 미미하다 생각됨(광역대표도서관 관장 B)

- 도서관위원회협의회는 각 시·도의 부단체장인 광역도서관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효율적인 협의 및 교류의 어려움이 많음. 중앙과 지방의 도서관정책 및 교류 협력강화를 위해서는 각 광역대표도서관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운영이 효율적임(광역대표도서관 관장 J)

⑤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 개선에 앞서 지역도서관 정책의 추진의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관하여 관련 법제도, 조직 편제, 정책 기능 등을 정비하여 기능과 역할을 강화되도록 선행하는 것이 필요
- 이를 통해 지역도서관 정책의 추진에 따라 광역도서관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을 위해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을 광역지방자치단체 본청 내 도서관 정책 담당부서로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과 지역도서관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대표도서관 역할 정비가 우선되면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은 각 광역시도에서 스스로 실행할 것으로 생각함(광역대표도서관 관장 A)

- 강력한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주체를 시도 본청으로 명확하게 법에 규정하고,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도서관정책을 강력하게 수립·추진할 기구(1개팀 또는 과)를 두도록 도서관법을 보완하였으면 함(광역대표도서관 관장 B)

제3절 시사점

-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전문가 그룹과 광역도서관위원회 당연직 부위원장인 광역대표도서관장 그룹을 대상으로 의견과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표적 집단면접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첫째,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위계에 대해 조정할 필요. 이에 전문가 그룹은 지역도서관 정책을 결정하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도지사의 참여를 위해 현행 부시장·부지사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은 지역도서관 정책 실무책임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반면, 광역대표도서관장 그룹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인 광역 대표도서관 관장의 직급과 당연직 위원 간의 직급에 대한 차이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위원장을 현재의 부시장·부지사에서 국(局)장급으로 격하하거나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

- 둘째,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국가도서관위원회와 같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강제성을 부여하도록 해야 함. 현재의 「도서관법」에서는 위원회에 관한 기능과 역할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운영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에 대한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도서관법」에서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근거로 자치법규를 통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과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관계에 대해 두 그룹 모두 광역지방자치단체 본청 내 도서관 정책 부서 또는 광역대표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비교 검토하여 이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 이를 종합해 보면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지역도서관 정책의 심의 기구로서 거버넌스 역할을 하도록 하고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실무추진하는 역할로 하되 광역대표도서관의 위상 제고와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
- 넷째, 도서관위원회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법률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운영이 필요 현재 도서관위원회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법률적 근거가 취약하며,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인 부시장·부지사의 도서관위원회협의회 참석이 어려워 부위원장인 광역대표도서관장의 대리 참석함에 따라 도서관위원회협의회·실무협의회·광역대표도서관 관장 회의의 차별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제5장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제안

-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법」 제17조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발전과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연구됨. 이에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법제적 진단,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관계 전문가 의견 및 실무협의회 담당자인 광역대표도서관 관장 의견 수렴을 실시함.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지역도서관 정책을 포괄적으로 심의하며 광역대표도서관 및 관련 위원회 등과의 명확한 역할을 규명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정책협의를 통하여 주요 도서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함
-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은 지역도서관 정책의 추진을 위한 중심축의 위치에 따라 2가지 안으로 제시되며 이에 따른 「도서관법」의 개정과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통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표준 자치법규(안)의 제시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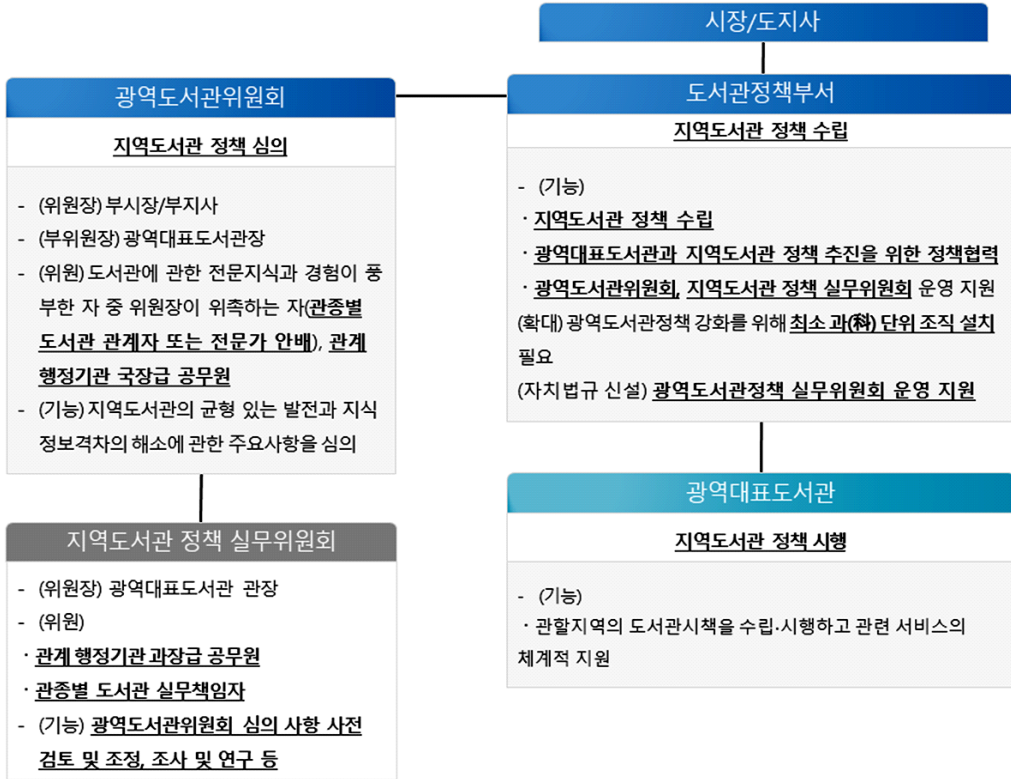
### 제1절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모델

#### 1. 제1안 : 도서관 정책부서 중심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 도서관정책 심의 기능 강화

- 제1안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도서관정책 부서가 지역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지역도서관 정책을 심의하며, 광역대표도서관에서는 이를 시행하는 체제로 제안됨. 그리고 제1안에서와 같이 이와 함께 도서관위원회협의회 산하 실무협의회와 별도로 지역도서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지역도서관 정책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 따라서 [그림 5-1]에서와 같이 본청 내 도서관정책 부서 중심의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을 위한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광역도서관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관종별 도서관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안배하고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의 경우 정책 담당 부서장으로 국장급 인력이 배치되도록 해야 함. 「도서관법」에 따라 광역도서관위원회가 당해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이에 대해 위원회 운영 및 관계회의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 구성에서 이를 반영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임. 단,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현행 법률에서와 같이 부시장·부지사와 광역대표도서관장으로 함
- 둘째, 광역대표도서관은 현재의 단일 사업소로서 본청 내 도서관정책 부서에서 수립한 지역도서관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이에 따라서 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도서관정책 수립 및 시행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법」과 사업소에 대해 정책을 수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의 충돌을 회피하도록 함
- 셋째, 도서관정책부서는 지역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광역대표도서관과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협력 그리고 광역도서관위원회 및 지역도서관 정책 실무위원회를 운영 및 지원하도록 함. 이에 지역도서관 정책 강화를 위해 최소 과(科) 단위 조직 설치를 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지역도서관 정책 실무위원회를 광역도서관위원회 산하 기구로 신설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의 사항 사전 검토 및 조정과 조사 및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따라서 위원장은 광역대표도서관장으로 하며 관종별 도서관 실무책임자, 관계 행정기관 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이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5-1]과 같음



[그림 5-1]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제1안)

## 2. 제2안 : 광역대표도서관 중심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광역 도서관위원회의 거버넌스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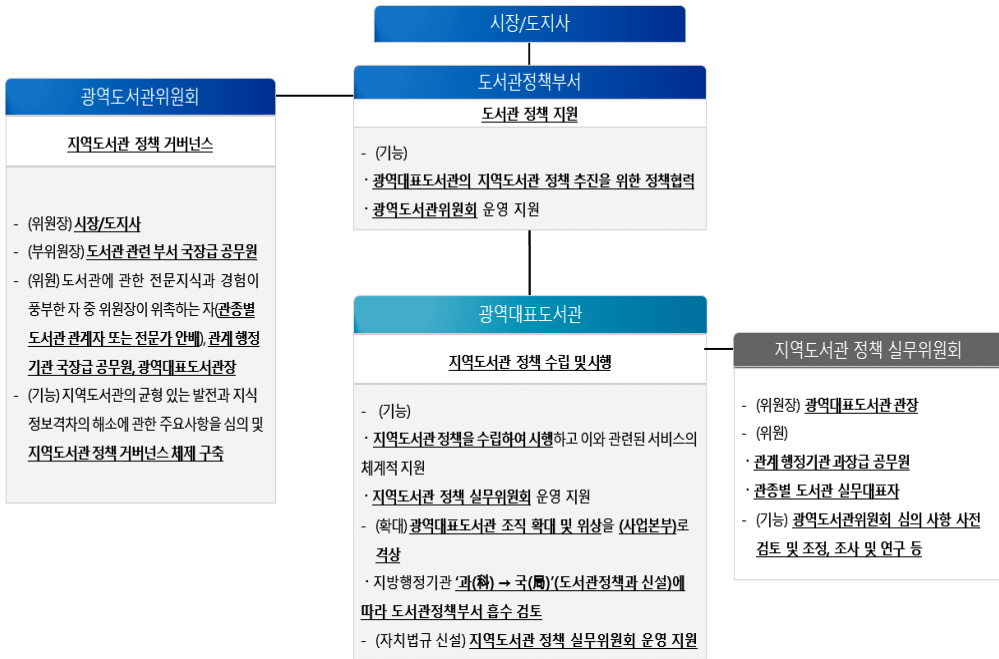
- 제2안에서는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지역도서관 정책 거버넌스의 역할과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함. 그리고 광역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 및 위상을 상향하여 직접 지역도서관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이와 함께 도서관위원회협의회 산하 실무협의회와 별도로 지역도서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광역대표도서관 산하 지역도서관 정책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 따라서 [그림 5-2]에서와 같이 광역대표도서관 중심의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을 위한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살펴 보면, 첫째, **광역도서관위원회**는 현행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으로서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지역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함. 이에 위원 구성에 있어 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현재 부시장·부지사에서 시장·도지사로 재격상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부위원장은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에서 도서관 관계 행정부서 국(局長)급 공무원으로 하여 광역대표도서관에서의 도서관정책에 대한 자기심의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있어 당연직 위원의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관종별 도서관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안배하여 위촉하도록 함
- 둘째, 광역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역도서관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 사업소(4급 상당)에서 사업본부(3급 상당)로 격상함. 현재 광역대표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사업소로 지역도서관 정책을 수행할 수 없어 「도서관법」과 상충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시·도가 특정 지역과 관련된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 기획 기능 등 본청의 기능을 현장에 위치한 별도의 장소에서 수행하게 하거나 본청의 기능을 사업소의 기능과 통합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광역대표도서관이 지역도서관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소에서 도서관 사업본부로 조직의 확대 개편 필요.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 과(科) 이상의 소관 업무가 있는 경우** 동규정 제9조제1항과 관련한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3급 사업본부의 설치가 가능**함. 그러므로 「도서관법」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위해서는 현재의 단일 사업소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며 제역할을 위해서는 직접 지역도서관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국(局) 단위 사업본부의 설치 필요. 이때 광역대표도서관의 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6항 관련 [별표 6] 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기준 등에 따라 도서관 사업본부장으로서 3급 또는 4급으로 임명할 수 있음. 따라서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도서관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사업본부 형태로 조직 확대와 위상을 제고하고



내부에 도서관정책과를 신설하여 지역도서관 정책 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담당하도록 함. 이를 통해 광역대표도서관의 기능으로 「도서관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지역도서관 정책을 수립 및 시행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지역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역할 수행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에서 수립된 지역도서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광역도서관위원회 심의 사항 사전 검토 및 조정,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해 지역도서관 정책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위원 구성으로 위원장은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 관련 관계 행정기관 과장급 공무원과 관종별 도서관 실무대표자 등으로 함
- 넷째, 도서관정책 부서는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협력 부서로 운영되도록 하며,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및 지원을 하도록 함
- 이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5-2]와 같음



[그림 5-2]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제2안)

## 제2절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이 연구에서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위해 제안한 2가지 방안 모두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수적임. 이에 「도서관법」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자치법규 등의 개정이 필요함

### 1. 도서관법

-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위해 제안한 2가지 방안 중 제1안은 현행 「도서관법」의 개정을 필요치 않으나, 제2안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도서관법」 개선이 필요함. 개선의 내용으로는 위원회 기능에 대한 구체적 사항의 규정과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요구됨
- 이에 먼저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표적집단면접 결과 시사점에서 도출되었듯이 국가도서관위원회와 같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현재 「도서관법」에서는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광역도서관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과의 정책적 협의를 통해 지역도서관 정책 대한 포괄적인 심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점에서 해당 규정으로는 그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음. 그리고 이를 근거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어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는데 혼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 결과와 전문가 그룹·광역대표도서관 관장 그룹 대상 표적집단면접 결과를 근거로 하여 유사 위원회 기능에 대한 규정을 참고하여 「도서관법」을 통해 위원회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음의 <표 5-1>에서와 같이 「도서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에 대해 개정할 것을 제안함. 주요 기능으로 제15조에 따른 시도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 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지역도서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도서관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안함

- 한편, 이 연구에서 제안한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2에 따르면 위원회의 대표성 요구와 지역도서관 정책에 대하여 광역대표도서관이 수립하고 스스로 심의하는 오류를 회피하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 이에 광역도서관위원회가 지역도서관 정책 대한 포괄적 심의와 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부시장·부지사에서 시장·도지사로 격상하도록 하며, 부위원장은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에서 도서관 소관 정책 담당 부서의 책임자인 실·국장급 관계 공무원이 선임하도록 개정되어야 함

<표 5-1> 광역도서관위원회 법적 설치 근거 개선 : 「도서관법」

도서관법 2021년(현행)	도서관법(개선 안, 2안 기준)
<p><b>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b>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 (중략)</p> <p><b>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①</b>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이하 “지역도서관”이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략)</p> <p>④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24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p>	<p>(좌동) (좌동) (중략)</p> <p><b>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 (좌동)</b></p> <p>(좌동)</p> <p>1. <b>제15조에 따른 시도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b> 2. (좌동) 3. <b>지역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b> 4. <b>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b> 5. <b>국가도서관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b> 6. 그 밖에 지역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략)</p> <p>④ <b>위원장은 시장·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소관 부서의 실·국장에 해당하는 관계 공무원이 되며, …</b></p>

- 이를 통해 광역도서관위원회의 법률적 근거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 자치법규에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가능할 것이며, 위원회의 분명한 기능을 통한 운영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2. 자치법규

-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도서관법」에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법규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앞서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실태를 분석한 결과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관련 자치법규의 수준과 내용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위원회의 기능이나 위원 구성에 대해서 조차 규정되지 않고 있는 곳이 있음. 이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과 제 기능을 위해서는 「도서관법」에 근거한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가 필요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해 다음의 <표 5-2>와 같은 사항을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안)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
-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안)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됨
  - 자치법규 규정 구성 :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 직무, 회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비, 위원 해촉, 간사 및 서기, 지역도서관 정책 실무위원회, 의견청취, 수당 등, 운영세칙

<표 5-2>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안)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안)_제1안 기준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안)_제2안 기준
<p><b>제○조(설치)</b> 「도서관법」 제17조에 따라 지역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 등 지역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시장/도지사 소속하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p> <p><b>제○조(기능)</b> 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li> <li>2. 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li> <li>3. 지역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li> <li>4.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li> <li>5. 국가도서관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li> <li>6. 그 밖에 지역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b>제○조(구성)</b> ① 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부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광역대표도서관장이 된다.</p> <p>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도서관 업무 담당 실·국장과 교육청 도서관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종별 도서관을 안배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도의회 도서관 소관 위원회 의원 1명</li> <li>2. 공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4조 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속하는 도서관의 관장 및 관계자 중 3명</li> </ol>	<p><b>제○조(설치)</b> … (좌동)</p> <p><b>제○조(기능)</b> … (좌동)</p> <p><b>제○조(구성)</b> … (좌동)</p> <p>②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u>시장/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본청 도서관 소관 부서의 실·국에 해당하는 관계 공무원이 된다.</u></p>

<p>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안)_제1안 기준</p>	<p>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안)_제2안 기준</p>
<p>3.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관계자 중 4명</p> <p>4.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p> <p><b>제○조(위원장 직무)</b> ①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며, 도서관위원회협의회 회의 참석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p> <p>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b>제○조(회의)</b>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p> <p>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b>제○조(임기)</b>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②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b>제○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b> ①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와 공정을 위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p> <p>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 도서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p>	<p><b>제○조(위원장 직무)</b> … (좌동)</p> <p><b>제○조(회의)</b> … (좌동)</p> <p><b>제○조(임기)</b> … (좌동)</p> <p><b>제○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b> … (좌동)</p>

<p>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안)_제1안 기준</p>	<p>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안)_제2안 기준</p>
<p>할 수 있고, 도서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p> <p><b>제○조(위원 해촉)</b>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li> <li>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li> <li>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b>제○조(간사 및 서기)</b> ①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둔다.</p> <p>② 간사는 본청 도서관 소관 부서의 과장, 서기는 도서관위원회 담당자가 된다.</p> <p><b>제○조(지역도서관 정책 실무위원회)</b> ①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③ 실무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이 되며, 위원으로는 관계 행정기관 과장급 공무원과 관종별 도서관 실무대표자 가운데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한다.</p> <p>④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서관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등에 관한 사항</li> <li>2. 도서관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li> </ol>	<p><b>제○조(위원 해촉)</b> … (좌동)</p> <p><b>제○조(간사 및 서기)</b> … (좌동)</p> <p><b>제○조(지역도서관 정책 실무위원회)</b> … (좌동)</p>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안)_제1안 기준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안)_제2안 기준
<p>3. 그 밖에 도서관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⑤ 실무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는 본청 도서관 소관 부서에 두도록 한다.</p> <p><b>제○조(의견청취)</b> 도서관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도서관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p> <p><b>제○조(수당 등)</b> 도서관위원회 위원, 실무위원회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b>제○조(운영세칙)</b>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⑤ 실무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는 <b>광역 대표도서관</b>에 두도록 한다.</p> <p><b>제○조(의견청취)</b> … (좌동)</p> <p><b>제○조(수당 등)</b> … (좌동)</p> <p><b>제○조(운영세칙)</b> … (좌동)</p>

-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안)의 총 13개 조항을 기준으로 시·도별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자치법규와 조항별로 적정(◎), 미흡(△), 해당없음(-)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다음의 <표 5-3>과 같음



<표 5-3>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안) 기준  
시·도별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비교

구분	지역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안)												
		설치	가능	구성	위원장 직무	회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위원 해촉	간사 및 서기	지역도서관 정책 실무위원회	의견 청취	수당	운영 세칙
1	서울	◎	◎	◎	△	◎	◎	-	◎	◎	◎	◎	◎	
2	부산	-	-	-	-	△	◎	-	-	△	-	◎	△	◎
3	대구	◎	◎	◎	-	◎	◎	-	-	◎	-	-	◎	◎
4	인천	◎	△	◎	-	◎	-	-	◎	◎	-	-	◎	◎
5	광주	◎	◎	◎	◎	◎	◎	-	◎	◎	-	-	◎	◎
6	대전	△	-	-	-	◎	△	-	-	◎	-	◎	◎	◎
7	울산	△	△	◎	◎	◎	◎	-	-	◎	-	-	◎	-
8	세종	◎	◎	-	◎	◎	◎	◎	◎	◎	-	-	◎	◎
9	경기	◎	◎	◎	◎	◎	◎	-	-	◎	△	-	◎	◎
10	강원	◎	◎	◎	-	◎	△	-	◎	-	-	-	◎	-
11	충북	◎	-	-	-	◎	◎	-	-	◎	-	-	◎	◎
12	충남	◎	-	◎	-	◎	◎	◎	◎	-	-	-	◎	-
13	전북	◎	◎	◎	-	◎	◎	-	-	◎	-	-	◎	◎
14	전남	◎	◎	◎	◎	◎	◎	-	◎	◎	-	-	◎	-
15	경북	◎	◎	◎	◎	◎	◎	-	◎	◎	-	-	◎	-
16	경남	◎	-	◎	◎	◎	◎	-	◎	◎	-	-	◎	-
17	제주	◎	◎	◎	◎	◎	◎	-	◎	◎	-	-	◎	◎

### 3. 행정조치

-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 제안한 제2안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지위를 현재 사업소(과 단위 4급 상당)에서 사업본부(실·국 단위 3급 상당)로 조직을 확대하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
- 현재 법률 상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도서관 정책을 수립할 수 없으며,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의 직급이 4급(과장) 상당으로 지역도서관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음. 이에 앞서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및 전문가 표적 집단면접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서관법」에 따라 지역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이 광역도서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필요에 따라 위원장의 업무를 위임받아 위원회 업무 및 도서관위원회협의회 참석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위를 상향할 필요
-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광역대표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 요건 충족 시 조직을 확대하여 개편하도록 해야 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 과(科) 이상의 소관 업무가 있는 경우 동규정 제9조제1항과 관련한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3급 사업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행정조치가 가능함

## 제6장 결론

- 광역도서관위원회는 2006년 전면개정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종합발전계획 시행 계획 및 이행 실적을 포함한 지역도서관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법적 기구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자치법규를 통해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5월 말 기준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4곳만 광역도서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8곳은 위원회의 법적 설치 근거가 마련된 10년이 지나서야 설치하고 있음
- 또한, 광역도서관위원회가 법적 근거에 따른 설치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제적인 운영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도서관 정책 심의 기구로서의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법제적 진단,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초 현황과 운영 실태조사, 관계 전문가 및 도서관위원회협의회 실무협의회 담당자 대상 FGI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을 실시.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 「도서관법」 및 관련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통한 법제적 진단을 한 결과 위원회의 법리적 위상의 격상 필요하며,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둘째,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초 현황과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당연직 위원 구성에 따른 개선과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 다양한 관종의 의견을 통한 정책적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주무 부서와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자치법규를 통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요구됨
- 셋째, 광역도서관위원회 관련한 전문가 및 도서관위원회협의회 실무협의회 담당자인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한 결과 법제적 진단 결과에서와 같이 광역도서관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법리적 위상의 격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광역도서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이 요구되었 으며, 도서관위원회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도 법률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도서관 정책의 중심축에 따라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모델을 2가지 안으로 구분하여 제안함
- 첫째, 제1안의 모델은 본청 내 도서관 정책부서 중심으로 광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 도서관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안함. 여기에서는 광역도서관위원회와 지역도서관 정책 실무위원회를 본청 내 도서관 정책부서가 운영 지원하도록 하며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도서관 정책의 시행 기관으로 두고 있음
- 둘째, 제2안의 모델은 광역대표도서관 중심의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에 따라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정책 거버넌스 역할을 하도록 제안함. 여기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 도서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역할을 하며, 지역도서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도서관 정책 실무위원회 운영 지원하도록 함. 그리고 광역도서관위원회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부시장·부지사에서 시장·도지사로 격상하도록 함. 또한,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지역도서관 정책을 수립하는 광역대표도서관 관장이 부위원장으로 자기 심의를 하지 않도록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부위원장으로 본청 내 도서관 관련 부서의 국장급 관계 공무원으로 제안함. 뿐만 아니라 광역대표도서관이 「도서관법」에서 명시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도서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해서는 단위 사업소에서 사업본부로 요건 충족 시 조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안함
- 제안한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도서관법」과 위원회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 등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 이에 개선안 및 제2안에 따른 「도서관법」에서의 광역도서관위원회 기능에 대해 제15조에 따른 시도의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 지역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도서관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안함. 그리고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시장·도지사로 격상과 부위원장에 대해 광역대표도서관이 아닌 본청 내 도서관 소관 부서의 실·국장에 해당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제안. 자치법규에 있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해 규정된 자치법규의 수준과 내용의 차이가 있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표준화된 자치법규로 규정될 수 있도록 이 연구에서 제안한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 모델에 따른 표준 자치법규(안)을 제안함
-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은 국가도서관위원회를 통한 국가도서관 정책과 광역도서관위원회를 통한 지역도서관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도록 하며 지역도서관 정책의 중심축에 따라 광역도서관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함

## 참고문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https://www.law.go.kr>
- 의안정보시스템. (2021). <http://likms.assembly.go.kr>



## 연구진

- 연구책임자 : 김보일(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연구협력관 : 김인숙(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사무관)

## 광역도서관위원회 실태조사

---

발행일 | 2021년 12월 30일

발행인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www.clip.go.kr](http://www.clip.go.kr)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 7층  
02-590-6228

인쇄처 | (주)계문사 (02-725-5216)

---

© 2021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lip.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광역도서관위원회  
실태조사

---

2021. 12.

